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개정)

1 요청사유 (자본시장과, 2021.9.28.)

- (개정 내용) 전매기준 적용 기준, 합병가액 산정 특례요건, 보호예수 증명서 제출 내용 등 '스팩 존속'을 전제로 기술된 조문을 '스팩 소멸' 합병(그간 거래소 규정상 금지) 가능성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

※ 관련 규정 개정 : 한국거래소 상장규정

현행	개정('21.8.25.)
· SPAC이 존속, 합병 증자분 추가상장	· (선택1) SPAC이 존속, 합병 증자분 추가상장 · (선택2) SPAC 상장폐지 (합병대상회사 존속) & 합병후법인 신규상장

- (요청 사항) 관련 규정과의 일치를 위한 개정이고, 관련 규정과 적용이 불일치될 경우 SPAC시장(21.9월 기준 규모 : 8천억원)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고기간 단축 필요

\* 아울러, 스택소멸 합병시에도 법인세법 이연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안이 '22.1.1일 시행예정인바, 12월중 개정완료 필요성

2 검토 내용

- 금번 개정은 공시규제 등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, 관련 규정과의 일치하기 위한 것이고, 일반 국민의 권리·의무변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※ '금융위 법제업무 운영규정' 제20조 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 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1.9.28일~10.18일 (20일간)